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에서 운영해야 하는 주민공동이용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도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여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의 보수 지원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경로당 보수 지원금 구 분담률을 70%에서 90%로 상향함(안 별표 1 제1호나목의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8.31.~9.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에서 운영해야 하는 주민공동이용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도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여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의 보수 지원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공동주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비율을 기존 70%에서 90%으로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로당 보수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구 분담률 60%이하 지원 자치구가 20곳이며, 70% 이상 지원 자치구는 3곳임.

구 분담률	기 관 수	자 치 구
50%	8기관	양천구, 강서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60%	12기관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광진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동작구, 종로구, 금천구
70%	2기관	용산구, 강남구
90%	1기관	중랑구
기타	1기관	송파구(금액별 차등 지원)

- 지난 6월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지원에 대한 구 분담율을 50%에서 70%으로 상향 개정한바, 추가적인 구 분담율 상향은 좀더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을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나. “공용 및 공공용의” 명시(안 제1조, 제3조, 제6조)
- 다. “공용 청사 및 공공용 청사”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인원·대상, 기능 정비(안 제11조, 제12조)
- 마. 띄어쓰기 수정, 용어 통일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3조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3)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9. 7.~9.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청사 건립기금을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기금의 대상 범위를 기존 “구청, 보건소, 구의회”에서 더불어 “동주민센터”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용 청사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 또한 기금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 11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개정 및 위원회의 구성 인원·대상을 확대 정비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예비비 지출”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 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청사건립 관련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포함 15개의 자치구¹⁾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이며 그 중 10개의 자치구²⁾에서 “공용 청사”와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공공용 청사”까지 기금의 대상 범위로 정하여 한 기금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음.
- 우리 구 또한 공용 청사와 더불어 공공용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원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강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2)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강동구, 성북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